

심의 완화 사항	높이	기 정	• 최고높이 : ① + ② = 133.7m → 130m 적용 ① 개방형 녹지율에 따른 높이 완화 : 122.7m	
			개방형 녹지율	산식 = 적정건폐율(50%)×(기준높이(90m)+20m)÷(80%-개방형녹지율(35.16%)) = 50% × (기준높이 90m + 20m) ÷ (80% - 35.16%) = 122.7m
		변 경	②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: 11.0m	
			공개공지 초과제공	산식 = 기준높이×(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×1/2)÷대지면적 = 90m × (668.15㎡ × 1/2) ÷ 2,735.4㎡ = 11.0m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기 정	• 최고높이 : ① + ② = 132.5m → 130m 적용 ① 개방형 녹지율에 따른 높이 완화 : 122.3m	
			개방형 녹지율	산식 = 적정건폐율(50%)×(기준높이(90m)+20m)÷(80%-개방형녹지율(35.02%)) = 50% × (기준높이 90m + 20m) ÷ (80% - 35.02%) = 122.3m
		변 경	②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: 10.2m	
			공개공지 초과제공	산식 = 기준높이×(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×1/2)÷대지면적 = 90m × (620.05㎡ × 1/2) ÷ 2,735.4㎡ = 10.2m
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		전면공지	•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	
		개방형 녹지	• 획지 내 30% 이상 개방형 녹지 조성 • 서측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휴식과 여가 공간이자 소통과 교류의 활력 공간으로 조성	
		공개공지	• 주변지역과의 보행 연계성 증진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대상지 서측변 공개공지 지정	

7. 환경보전,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8. 정비사업 시행계획(변경없음)

Ⅲ. 변경사유

- 서울시 고시 제2023-479호(2023.11.09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에 대하여, 고시 이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변경된 공개공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면적 등에 대하여 반영하고자 정비계획 변경 범위내에서 변경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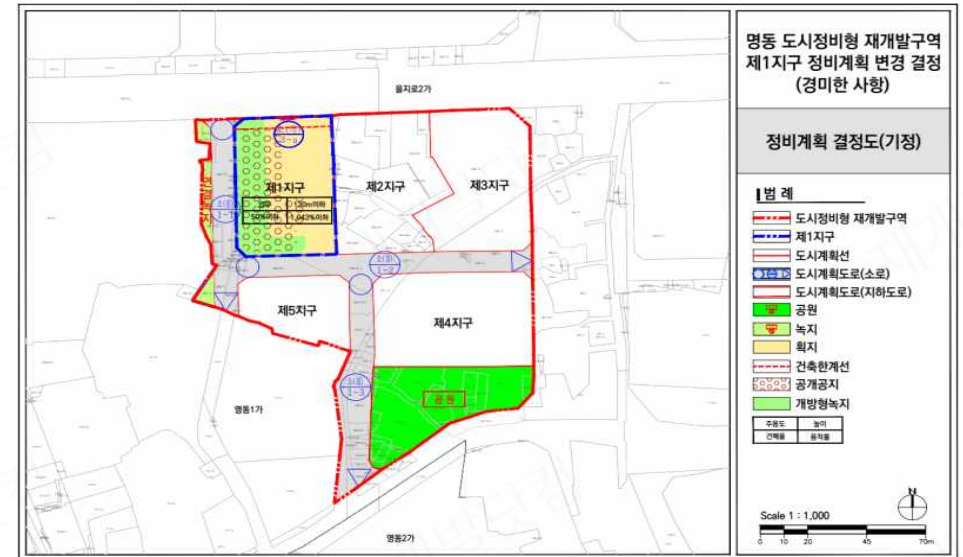
Ⅳ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- 정비계획 결정(변경)도
- 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Ⅴ. 열람장소

-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(02-3396-5772)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

■ 명동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도(기정)



■ 명동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도(변경)

